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화포천 금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가압장 설치공사(전기)
-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다.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 금곡리 일원, 화포천(국가하천)
-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630,000	11,630,000	10,572,728	1,057,272

- 사. 공사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청 하천계획과(☎055-212-0313)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제출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7. 30. ~ 2026. 08. 07.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8. 07. 11:00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 나. 「전기공사업」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담당 (☎055-212-031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177,415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연금보험료	225,2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975	
일반관리비	534,832	

-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총무과 계약담당(☎055-211-1322)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청 하천계획과 담당(☎055-212-0313)

2026. 07. 30.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